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4년 6월 28일

· 회부일자 : 1993년 6월 28일

3. 개정이유

도시계획법 시행령의 개정 (1992. 7. 1 대통령령 제13684호)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조항을 상위법령과 일치되도록 하고, 도시계획에 관한 신중한 검토와 의결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임기획단을 설치하여 도시계획에 관한 전반적인 기획조사 및 연구기능을 강화코자 하는것임.

4. 주요골자

-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중 "위원장, 부위원장을 두고 위원을 20인 이내로 한다"를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22인 이내의 위원으로"개정
- 위원의 구성중 도의회 의원을 상위법에 따라 위원으로 참여토록 하였으며, 위원중 공무원의 인원수 제한 및 위촉자를 "부지사"에서 "도지사"로 개정
-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조항 신설
-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 조항 신설
- 도시과장을 위원회 업무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으로 변경

5. 검토의견

도시계획법 시행령의 개정(1992. 7. 1)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의 조항을 상위법령과 일치되도록 하고, 도시계획의 신중한 검토와 의결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임기획단을 설치 도시계획에 관한 전반적인 기획조치 연구기능을 강화코자 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동 조례는 '93. 3. 6 충청북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3. 3. 10 제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동 조례안을 의결하여 동년 3. 11 지사에게 이송한바, 본 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 구성요건 등이 법률에 위배됨을 이유로 동년 3. 25 지사로부터 재의요구가 있었으나, 동년 7. 13 제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재의결하여 이송한 바, 도지사는 동년 7. 26 대법원에 동 조례안 무효확인 소송을 제소하여 '94. 5. 10 대법원으로부터 재의결한 동 조례의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있어 개정조례안이 제출된 것으로 그 문제 조항은 개정 제출된 제6조 제3항 "위원은 도의회의원 및 도의 관계 실·국·과장과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기타 위원회의 목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한 부분중 도의회의원을 삭제 의결한 부분과, 제13조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즉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부분을 도의회의장에게도 보고토록 의결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도시계획에 관한 주민 의견을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구성에 참여함과 자문에 관한 사항을 의회의장에게 보고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시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첨 부 : 1.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개정조례안 1부.
2. 조례안 무효확인 소송 확정판결문 1부.